

1. 개정이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야간·
휴일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
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 정비(안 제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
개정으로 ‘응급의료 통신망’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용어를
정비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통일함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안 제7조의2)

법 제15조제7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
인정보 접근 통제·권한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신설함

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관련 세부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법 제34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정방법·절차를 구체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응급의료 통신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21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34조의2에 따라 야

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휴일 소아 진료의 필요성
2. 인력·시설·장비 및 협력 기관의 현황 및 운영계획
3. 의료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4. 그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그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7의2 제2호라목3)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등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의1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6호의5서식, 별지 제16호의6서식, 별지 제16호의7

서식, 별지 제16호의8서식, 별지 제16호의9서식, 별지 제16호의10서식, 별지 제16호의11서식, 별지 제16호의12서식, 별지 제16호의13서식, 별지 제16호의14서식, 별지 제1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6호의1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부터 별지 제24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월
의료기관	명 칭		의료기관 종류	요양기관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허가 병상 수	
신청인	신청인(개설자) 성명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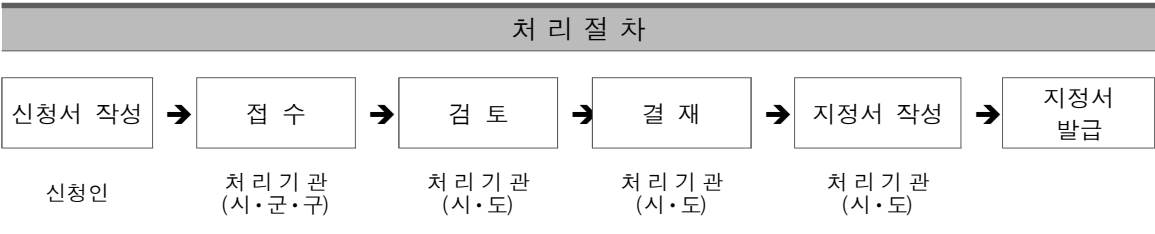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기간: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u>응급의료 통신망</u> 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 ----- ----- ----- ----- ----- ---- <u>응급의료정보통신망</u>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u>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u>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u> 2. <u>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u> 3. <u>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u> 4. <u>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u>

<신 설>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21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34조의2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휴일 소아 진료의 필요성

2. 인력·시설·장비 및 협력기관의 현황 및 운영계획

3. 의료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4. 그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그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